

2012년 7월 9일 이후 새로 일본에 입국하시는 외국인께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이세이 21년 법률 제 77호)가 시행됨에 따라, 2012년 7월 9일(시행일)부터 외국인 주민(주)도 주민기본대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에게도 주소지의 시구정촌에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시행일 이후 일본에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지니고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시는 「중장기체류자」(체류카드 교부 대상자. 체류자격이 「단기체재」이거나 체류기간이 「3개월」이하인 분 등은 포함되지 않음)인 분은 시구정촌에 주소를 새로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카드(공항등에서 체류카드를 교부받지 못한 분은 여권) 등을 가지고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지니고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중장기 체류자」분이나 「특별영주자」분 등으로 시구정촌의 구역내에 주소를 지니는 분을 말합니다.

《주의사항 : 가족과 같이 일본에 살고 있는 분께》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전입 신고를 하실 때, 외국인주민인 세대주와 같은 세대의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는 세대주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문서(일본 정부 등 공적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아울러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하므로 주의하십시오.

주민기본대장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 주민표를 편성한 것으로 주민분들에 관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표 사본의 교부 등으로 주민분들의 거주관계를 공증함과 아울러 주민분들에 관한 다양한 사무를 위하여 이용됩니다.

※주민기본대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문 [「외국인 주민의 주민기본대장제도가 시작됩니다」](#)를 보십시오.